

2017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2017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및 신체·체력·적성검사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3. 23.(목)

경 상 남 도 지 방 경 찰 청 장

□ 일반 남자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응시번호
10038	10513	10855	11366	11994
10052	10527	10891	11384	12021
10073	10536	10901	11389	12056
10083	10552	10911	11397	12148
10094	10574	10932	11403	이상 88명
10120	10578	10974	11452	
10124	10591	11026	11492	
10163	10606	11079	11496	
10174	10619	11085	11538	
10189	10645	11110	11581	
10201	10658	11126	11624	
10232	10672	11132	11647	
10246	10679	11165	11669	
10263	10712	11167	11752	
10297	10720	11232	11785	
10303	10730	11266	11809	
10334	10733	11270	11844	
10398	10752	11290	11848	
10407	10787	11304	11865	
10473	10848	11322	11866	
10496	10853	11345	11966	

□ 일반 여자

응시번호
20155
20262
20280
20282
20286
20325
20366
20372
20453
20593

이상 10명

□ 전의경 경제

응시번호
50006
50013
50015
50016
50042
50052
50056
50057
50070
50078
50095
50108
50116
50137
50237
50240
50263
50275
50278

이상 19명

□ 필기시험 합격자 신체 · 체력 · 적성검사 일정 및 제출서류 등

1. 신체 · 체력검사 일정

구 분	일 시	장 소	참석대상	비 고
1일 차	'17. 4. 4.(화), 08:30	창원종합운동장 주경기장	전 원	100m
				1,000m
2일 차	'17. 4. 5.(수), 08:30	경남지방경찰청 상무관	일반여자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전 의 경	
	'17. 4. 5.(수), 13:00	경남지방경찰청 상무관	일반남자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악력

- 신체 · 체력검사는 남녀 구분 실시
- 도핑테스트 실시 예정 - 측정방법 별도 첨부
 - 채용과정 중 금지약물복용(스테로이드 등)이 확인될 경우 최종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응시생은 시간엄수하여 해당 장소에 도착, 개인별 스트레칭 할 것
-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운동복(반팔·반바지 포함), 운동화(스파이크화 불가)
- 우천 및 기타 사정으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경남지방경찰청 채용정보란에 공지
- 신체 · 체력검사일 필기구 지참

【공통사항】

- 신체 · 체력검사는 부모, 학원관계자, 친구 등 일체 출입금지
- 상무관 : 신체검사, 좌우악력,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전자측정기)
 - 남자 : 팔굽혀펴기는 상의 탈의 측정
 - 여자 : 샤워캡, 가슴밴드 착용 후 측정(상의는 신체에 밀착되는 옷 착용)
- 창원종합운동장 : 100m달리기(전자측정기), 1,000m달리기
- 체력검사 측정방법 참고(붙임 참조)

2. 적성검사 일정

○ 일 시 : 2017. 4. 10.(월), 09:00

○ 장 소 : 창원문성대학 8동 교육관 5층 문성홀(창원시 의창구 두대동 소재)

※ 응시생은 08:50까지 8동 교육관 5층 문성홀 입실, 교내 주차시(유료주차장)

○ 대 상 : 2017년 제1차 경찰공무원(순경)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 체력검사 불합격자 제외

	일 자	분야별	대 상
세부내용	'17. 4. 10.(월)	일반남자 일반여자 전의경 경채	전원 (체력검사 합격자)

○ 준비물 : 컴퓨터용 싸인펜 2자루, 검정색 펜, 응시표, 신분증

3. 면접시험 일정

○ '17. 5. 15.(월), 경남지방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란 공고 예정

※ 공고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

○ 서류 제출시 주의사항

- 스테이플러를 사용하거나 서류를 접어서 제출하지 말 것
- 제출서류 매장 하단에 응시번호 및 성명 기재
- 모든 서류는 양면으로 프린터 하지 말 것
- 서류 사이사이 띠지 등을 붙이지 말 것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2017. 4. 10.(월) 제출할 서류 : 적성검사일 제출

- ①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국·공립병원 또는 종합병원 발행) 1부
 - 채용신체검사서에 시험기관, 응시직, 응시번호 기재를 요청하거나 본인이 할 것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결과 불합격, 보류 판정일 경우 신체검사는 불합격 처리함
 - ※ 반드시 약물검사를 포함할 것(마약검사는 간이소변약물검사 T.B.P.E임)
 - ※ 인정기간 : 채용시험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된 것에 한함 (2016. 11. 10 이후 발행)
- ② 기본증명서(상세용,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표시된 것) 1부
- ③ 가족관계증명서(상세용,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정확히 표시된 것) 1부
 - ※ 가족관계 증명서는 형제자매가 나와야 하므로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 받을 것
- ④ 신원진술서(붙임 양식 사용) 2부
 - 사진부착 및 서명 또는 날인은 각각 하여야 함(복사본은 인정하지 않음)
 - 사진은 원본사진(스캔사진, 칼라복사사진 등 불가)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2부 제출(신원진술서 및 개인신용정보조회서 등에 사용 예정)
- ⑤ 고등학교생활기록부 : 검정고시 출신자는 중학교생활기록부 2부
- ⑥ 개인신용정보(조회)서 : 발급기관 붙임 참조 2부
- ⑦ 신원확인조회서(붙임 양식 사용) 1부
 - ※ 지문채취시 담당경찰관에게 삼각도가 잘 보이도록 채취해 줄 것을 요청
- ⑧ 자격증 사본 및 자격증 가산점 기재부(각종 기사·자격·대형면허 등) 각 1부
 - 추가로 취득한 자격증은 4. 14.(금) 18:00까지 교육계로 제출
 - 카드 자격증은 앞·뒷면 복사, A4용지 자격증도 가능
 - A4용지 이상의 크기는 축소 복사하여 제출
- ⑨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 ⑩ 병적증명서(남자만 병적확인용) 1부
- ⑪ 훈장·표창장·감사장 사본 1부
 - ※ **중요범인 검거**를 통해 경찰관서장의 상훈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상훈의 구체적 내용과 증빙서류 제출)

□ 개인신용정보서 발급방법(칼라, 흑백 가능)

○ 발급기관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업자(법인)

- 은행은 본인에 한해 열람만 가능하고 일부 발급해주는 기관이 있으나 일정한 양식이 없고 증명서가 아니므로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업자가 발급한 신용정보서에 한함

※ 단, 발급기관 직인이 없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발급절차

- 은행연합회 : 직접방문(민원실), 또는 www.credit4u.or.kr
- 신용정보업자 : 방문, 인터넷, 우편이용 가능

□ 은행연합회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1가 4-1 은행회관내

○ 대표전화 : 02-3705-5000

○ 교통편

-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하차(5번 출구), 4호선 명동역 하차(6, 7번 출구)

□ 신용정보업자 현황

상 호	주 소	인터넷 주소	전화번호
나이스평가정보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17번지	www.mycredit.co.kr	02)2122-8000
한국신용평가정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5-28	www.creditbank.co.kr	02)3771-1000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www.allcredit.co.kr	02)708-1000

※ 제출서류는 공문서로 개인 임의로 위조 또는 변조 할 경우 관계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되니 유의 바람.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 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 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 · 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예관한법률」에 따라 관리 · 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 (미성년자는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본인				
배우자				해당없음
자녀				해당없음
자녀				해당없음
자녀				해당없음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	가 족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자부·인사처) ■ 주민·범죄경력·수사·수배 <u>조회자료</u>(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행자부) ■ 주민자료(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응시번호 :

성명 :

자필서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 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예관법률」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 (미성년자는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본인				
배우자				해당없음
자녀				해당없음
자녀				해당없음
자녀				해당없음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	가 족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자부·인사처) ■ 주민·범죄경력·수사·수배 조회자료(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행자부) ■ 주민자료(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응시번호 :

성명 :

자필서명

신원진술서, 자격증가산점 기재부, 신원확인서 양식

※ 모든 서류는 스테이플러(호치케스)로 찍지 말고 그대로 제출

- 필기시험 합격자는 지정기일내 신원진술서, 자격증 가산점 기재부, 신원확인조회서 등 모든 서류를 워드로 작성

자격증가산점 기재부는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작성, 제출하기 바랍니다.

1. 신원진술서 양식은 각 1장씩 출력되도록 한다.(양면금지)

가. 해당란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나. 작성한 양식 각 앞면 우측 상단에 반드시 본인사진(6월 이내 촬영)을 붙이고,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제출한다.

2. 매장마다 하단에는 반드시 응시분야, 응시번호 기재한다.

○ 참고사항

1. 등록기준지 기본증명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기록
2. 주소는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기재
3. ‘실거주지’는 현재 살고 있는 곳 기재.(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할 것)
※ 마산·진해시의 경우 통합시 변경된 주소로 기재 할 것
4. 휴대전화는 본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번호 기재
5. E-mail은 사용하는 계정 모두 기재
6. ‘학력’란에는 초등학교부터 최종학력까지 기록(기간 기재시 월단위까지만 기재)
7. ‘경력’은 관공서 또는 일반기업체 근무경력 등 기록
8. ‘가족사항’은 생존한 조부, 조모, 부, 모, 형제자매까지 기록
※ 출가한 누이(여동생) 등은 기재할 필요 없음
9. ‘친교’는 초, 중, 고, 대학교 관계없이 2명만 기록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사 진] 사진파일 가능 (3cm×4cm) · (3.5cm×4.5cm)
등록기준지						
주 소						
실거주지						
직 장	직장명 : 소재지 :			연 락 처	직장전화 : 휴 대 폰 : E-mail :	
국 적	☐ 대한민국	☐ 복수국적 국가명:		☐ 외국국적 국가명:	배우자 및 자녀 국적	
특 기		취 미			자격증	
재 산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정당·사회 단체 활동	☐ 있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 . . ~ . . .		
	☐ 없음			. . . ~ . . .		
병 역	본 인	군 별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 . . ~ . . .	
	자 (성명)				. . . ~ . . .	
	자 (성명)				. . . ~ . .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경 력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벌 관계(일자)
			. . ~ . .		
			. . ~ . .		
			. . ~ . .		
해외 거주 사실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가족 관계	관 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 직 책	거 주 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 부모					
북한 거주 가족					
친교 인물	관 계	성 명	직 업 · 직 책		연 락 처
1.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 누락 또는 허위기재 사실이 있을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응시번호 :

성명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자필서명

자격증 가산점 기재부

※ 워드로 작성후 자격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여 클립 또는 더블클립으로 편철, 지정일에 제출
 자격증 가산점 기재부만 제출하고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점 미인정함.
 한 분야에 하나의 자격증만 인정하며, **가산점용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작성하여 제출**

응시 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최종졸업 학교,학과	전화번호
	한 글	한 문			
					휴대) 가정) 직장)

☐ 가산점 자격증(예시임으로 해당없는 자격증, 발급기관 삭제하고 소지 자격증만 기재)

연번	자격증	자격(면허)증 번호	발급기관	발급일자	비 고
1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산업인력관리공단		
2	워드1급		상공회의소		
3	무도 (태권도 2단)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등		
4	실용글쓰기 (550점이상)		한국국어능력평가협회		
5	국어능력인증		한국언어문화연구원		
6	1종대형면허		○○지방경찰청장	취득일자기재	
7	1종보통면허		○○지방경찰청장	취득일자기재	
8	토익	Registration number ()			
9	기타 자격증				

※ 무도단증은 2단 이상 단증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1. 위 기재사항은 자격증 취득방법에 허위 또는 부정 행위 등의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 만약 허위,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면 형사처벌 및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의하여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임용후라도 관련법령에 의한 처벌을 받는다 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의 활용에 동의합니다.
3. 어학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 2년이내 인정.

2017. . .

응시번호 :

성명 :

자필서명

자격증 가산점 기재부자격증 등의 가산점 기준표

분 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5점	4점	2점
학 위		-박사학위	-석사학위	
정보처리		-정보관리기술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1·2급 -워드프로세서1급 -정보보안산업기사
전자·통신		-정보통신기술사 -전자계산기기술사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전자·전자계산기기사 -통신설비기능장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통신선로·전자·전자계산기산업기사
국 어		-한국실용글쓰기검정 7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7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62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63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6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47점 이상	-한국실용글쓰기검정 550점 이상 -한국어능력시험 570점 이상 -국어능력인증시험 130점 이상
외 국 어	영 어	-TOEIC 900 이상 -TEPS 850이상 -IBT 102 이상 -PBT 608 이상 -TOSEL(advanced) 880 이상 -FLEX 790 이상 -PELT(main) 446 이상	-TOEIC 800 이상 -TEPS 720이상 -IBT 88 이상 -PBT 570 이상 -TOSEL(advanced) 780 이상 -FLEX 714 이상 -PELT(main) 304 이상	-TOEIC 600 이상 -TEPS 500이상 -IBT 57 이상 -PBT 489 이상 -TOSEL(advanced) 580이상 -FLEX 480 이상 -PELT(main) 242 이상
	일 어	-JLPT 1급(N1) -JPT 850 이상	-JLPT 2급(N2) -JPT 650 이상	-JLPT 3급(N3, N4) -JPT 550 이상
	중국어	-HSK 9급이상(新 HSK 6급)	-HSK 8급 (新 HSK 5급-210점 이상)	-HSK 7급 (新 HSK 4급-195점 이상)
노 동		-공인노무사		
무 도			-무도4단 이상	-무도2·3단
부 동 산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교 육		-청소년상담사1급	-정교사 2급 이상 -청소년지도사1급 -청소년상담사 2급	-청소년지도사 2·3급 -청소년상담사 3급
재 난 · 안전관리		-건설안전·전기안전·소방·가스기술사	-건설안전·산업안전·소방설비·가스·원자력기사 -위험물기능장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경비지도사	-산업안전·건설안전·소방설비·가스·위험물산업기사 -1종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 -조종면허(기중기, 불도우저) -응급구조사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면허

분 야	관련 자격증 및 가산점		
	5점	4점	2점
화 약	-화약류관리기술사	-화약류제조기사 -화약류관리기사	-화약류제조산업기사 -화약류관리산업기사
교 통	-교통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교통기사 -도시계획기사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교통산업기사
토 목	-토목시공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토목기사	-토목산업기사
법 무	-변호사	-법무사	
세무회계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급
의 료	-의사 -상담심리사1급	-약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간호사, 의무기록사, 치과기공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2급 -임상심리사2급 -작업치료사
특 허	-변리사		
건 축	-건축구조·건축기계설비·건축시공·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축, 건축설비기사	-건축·건축설비·건축일반시공산업기사
전 기	-건축전기설비·전기응용기술사	-전기·전기공사기사	-전기·전기기기·전기공사산업기사
식품위생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환 경	-폐기물처리기술사 -화공기술사 -수질관리기술사 -농화학기술사 -대기관리기술사	-폐기물처리기사 -화공기사 -수질환경기사 -농화학기사 -대기환경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화공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 비 고

1. 무도분야 자격증은 대한체육회에 가맹한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것 또는 법인으로서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지부당 소속도장 10개 이상)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중인 단체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함.
2. 어학능력자격증은 면접시험일 기준으로 2년 이내의 것만을 인정함.(공고문 참조)
3. 자격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으로 평가한다.
4. 자격증 제출기한은 당해 시험이 있는 적성검사 실시일까지로 한다.

가산점 인정 무도단체 현황(50)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6)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공수도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우슈쿵푸협회

●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법인) 요건을 충족한 단체(44)

대한기도회	재남무술원	대한국술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무술협회
세계합기도협회	대한신무합기도협회	한국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총연맹	KOREA합기도협회	대한국예원합기도협회
대한합기도연맹	대한합기도연합회	대한용무도협회
국제연맹합기도중앙협회	국제특공무술연합회	세계합기도무도연맹
대한종합무술격투기협회	국제당수도연맹	신대한기도회합기도무술협회
대한합기도유술협회	대한해동검도협회	세계태권도무도연맹
대한특공무술협회	세계경찰무도연맹	대한호국특공무술총연합회
한국해동검도연합회	대한특공무술연맹	대한검도연합회
한국해동검도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무에타이협회
K3세계국무도총연맹	세계합기도연맹	대한민국합기도협회
대한민국무무관합기도협회	한국경호무술협회	국술원
한국무예진흥원	한국특공무술협회	대한특수경호무술협회
대한민국해동검도협회	세계용무도	

별지 제13호 서식

※ 반드시 인적사항 작성 후 지문채취 바람

※ '본적'은 기본증명서를 참고하여 정확하게 기록

신 원 확 인 조 회 서

2016. . .

성 명		성 별	남 · 여	주민등록 번호					지 문 채 취 자	
본 적				생년월일	.	.	직업		소속	
주 소				의뢰사유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제출용				계급	
									성명	인
원 손 회 전 압 날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 손가락	
	채취하지 말 것		채취하지 말 것		채취하지 말 것		채취하지 말 것		채취하지 말 것	
오 른 손 회 전 압 날	둘째 손가락		셋째 손가락		넷째 손가락		다섯째 손가락		첫째 손가락	
	채취하지 말 것		채취하지 말 것		채취하지 말 것		채취하지 말 것			
평 면 압 날	왼쪽 손가락 평면지문			왼손 첫째손가락		오른손 첫째손가락		오른손가락 평면지문		
	채취하지 말 것			채취하지 말 것		채취하지 말 것		채취하지 말 것		
								취급자인		
								대조자인		

※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만 채취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번호 :

성명:

팔굽혀펴기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1. 양손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발은 모은 상태(여자는 무릎을 대고 무릎 이하는 바닥과 45도 각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팔은 직각, 몸은 수평이 되도록 한다.
2. 머리부터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한 상태에서 팔을 굽혀 **몸(머리~다리)과 매트 간격이 5cm 이내**로 유지시켰다가 원위치 한다.
3.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단 체력감독관이 측정방법에 어긋난 횟수는 측정횟수에서 감한다.

※ 남자 팔굽혀펴기 요령(사진)



※ 여자 팔굽혀펴기 요령(사진)



《체력검사의 평가기준표-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34조 (별표5-2)》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팔굽혀펴기(회/1분)	58 이상	57~52	51~46	45~40	39~34	33~28	27~23	22~18	17~13	12 이하
여자	팔굽혀펴기(회/1분)	50 이상	49~45	44~40	39~35	34~30	29~26	25~21	20~16	15~11	10 이하

윗몸일으키기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1. 양발을 30cm정도 벌려 무릎을 직각으로 굽히고 양손은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등을 매트에 대고 눕는다.
2. 측정회수는 등부위가 매트의 청색센스 부분에 닿게 한 후 양쪽 팔꿈치가 무릎쪽의 센스에 감지되었을 때 1회 측정한 것으로 한다.
3. 1분간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단 체력감독관이 측정방법에 어긋난 회수는 측정회수에서 감한다.

※ 윗몸일으키기 요령(사진)



《체력검사의 평가기준표-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34조 (별표5-2)》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윗몸일으키기(회/1분)	58 이상	57~55	54~51	50~46	45~40	39~36	35~31	30~25	24~22	21 이하
여자	윗몸일으키기(회/1분)	55 이상	54~50	49~45	44~40	39~35	34~30	29~25	24~19	18~13	12 이하

좌우 악력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1. 악력계를 수험생에서 주어 손잡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2. 양발을 어깨넓이 만큼 벌리게 하고, 좌우 팔을 몸으로부터 15도 정도 떨어지게 하되 무릎을 굽혀서 측정했을 경우에는 재측정한다
3. 감독관의 『준비』라는 구호에 맞춰 악력계의 손잡이를 잡고 『시작』이라는 구호에 손에 힘을 주어 우측→좌측→우측→좌측 악력 순으로 측정한다.
4. 측정시 악력계가 몸이나 바닥에 닿은 경우 감독관이 『그만』이라고 외친 후 재측정을 실시한다.
5. 측정이 끝난 후 악력계의 화면에 표시된 숫자를 기록한다.

※ 좌우악력 실시 요령(사진)



《체력검사의 평가기준표-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34조 (별표5-2)》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좌우 악력(kg)	61 이상	60~59	58~56	55~54	53~51	50~48	47~45	44~42	41~38	37 이하
여자	좌우 악력(kg)	40 이상	39~38	37~36	35~34	33~31	30~29	28~27	26~25	24~22	21 이하

※ 악력계에 측정된 기록의 소숫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100m 달리기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1. 2인 1조로 달리를 실시하며, 측정시간은 1/10초단위로 한다.
2. 중도에서 넘어지거나, 다리에 경련 등이 발생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20분 후에 다시 달리게 한다.
3. 출발선의 감독관인 신분확인 후 “준비”라는 예령이 있을 후 출발신호음(삐~)과 동시에 출발하여 응시생의 몸통이 결승선 위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10초 단위로 계측하여 정확히 기록한다.

※ 스파이크화 착용시 바닥에 부착된 금속핀은 제거하여야 한다.

《체력검사의 평가기준표-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34조 (별표5-2)》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m 달리기(초)	130 이내	131~ 135	136~ 140	141~ 145	146~ 150	151~ 155	156~ 160	161~ 165	166~ 169	170 이후
여자	100m 달리기(초)	155 이내	156~ 163	164~ 171	172~ 179	180~ 187	188~ 194	195~ 201	202~ 208	209~ 215	216 이후

※ 측정된 기록의 소숫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1,000m 달리기 측정 방법

□ 측정 방법

1. 15인 1조로 출발(400m 트랙), 출발선의 감독관이 신분확인 후 출발신호와 동시에 출발하여 응시생의 몸통이 결승선에 닿을 때까지의 시간을 1/10초 단위로 계측하여 정확히 기록한다.

※ 스파이크화 착용시 바닥에 부착된 금속핀은 제거하여야 한다.

《체력검사의 평가기준표-경찰공무원임용령시행규칙제34조 (별표5-2)》

구 분		10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1점
남자	1000m 달리기(초)	230 이내	231~ 236	237~ 242	243~ 248	249~ 254	255~ 260	261~ 266	267~ 272	273~ 279	280 이후
여자	1,000m 달리기(초)	290 이내	291~ 297	298~ 304	305~ 311	312~ 318	319~ 325	326~ 332	333~ 339	340~ 347	348 이후

※ 측정된 기록의 소숫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린다

응시생들의 바람직한 운동방법 및 주의사항

■ 시험당일 감독관에게 반드시 알려야 할 사항

- 가족중에 55세 이전에 심장병을 앓은 경우
- 평소 운동중이나 직후 가슴 왼쪽이나 중앙부위, 왼쪽 목, 어깨, 팔에 통증이나 압박감을 느낀 경우가 종종 발생한 경우
- 기절하거나 갑자기 현기증을 느끼는 경우가 자주 있거나 약간의 힘을 써도 심하게 숨이 차는 경우
- 의사로부터 혈압이 높다는 진단을 받고 조절을 하지 않거나, 자신의 혈압이 정상인지 모르는 사람
- 심장에 문제가 있거나 심장마비 진단을 받았던 자
- 관절염과 같은 골 및 관절질환을 진단받았던 자
- 운동할 때 특별히 주의질환(예 :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을 가진 자

■ 2-3주 동안의 운동방법

- 반복되는 훈련으로 기초체력을 키운다.

사람의 육체는 쓰면 쓸수록 한계점이 아닌 이상, 강화되게 되어 있다. 반복적인 훈련을 하면서 체력은 향상되고, 근력도 좋아지게 된다.

- 무리한 운동은 부상의 위험

평소에 하지 않던 운동을 갑작스럽게 하게 된다면 부상 등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습니다. 운동은 평소 건강을 유지하는 측면으로 하는 것이 최고로 우선시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체력향상, 반복과 함께 한계점까지

장거리 달리기를 할 경우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어느 순간 최대속력을 내면서 달린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처음에 달릴 때 힘들었던 거리를 어느 순간에는 가뿐하게 주파하는 시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 운동과 함께 충분한 영양 섭취가 필요

일반인들에게는 체계적인 운동과 그에 맞는 영양섭취가 필수다. 그 중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빠른 피로회복입니다. 피로감이 나타나는 이유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지만, 에너지 소모에 의한 피로감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리 몸에 기본적인 에너지원은 포도당(탄수화물)이다. 운동을 강하게 하거나 무더운 여름날 무리하게 운동을 하게 되면, 탈진 및 탈수증상이 생기게 된다. 이 경우 병원에 가서 링겔이라고 하는 포도당 수액을 맞으면 피로회복에 도움이 된다.

■ 심폐지구력 강화 운동 방법(1,000m 달리기 대비)

- 나이가 들수록 상대적 운동강도가 높으므로 최대운동 강도의 50~85%범위를 넘지 않으며 점진적으로 운동적응을 해 나간다.
- 운동시간은 처음 10~20분에서 점차 운동시간과 거리를 늘여 나가 30분 이상이 되도록 한다.
- 운동은 처음에 걷기부터 시작하여 지속걷기가 30분 이상되면 걷기와 달리기 5~10분을 혼합하여 마지막에는 달리기 위주로 훈련을 한다.(점증부하의 원칙)

- 개인은 체력과 건강수준이 다르므로 개개인의 특수성을 인정해야 하며 타인과 경쟁하지 않는다.
- 초창기에는 되도록 전문가의 조언을 얻고 트레이닝의 원리에 따라 점증적으로 운동시간과 강도를 늘여나가며 몸에 이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운동을 중지하고 전문의의 처방을 받도록 한다.

■ 운동을 바로 중지해야 할 경우

- 심장에 통증이 오거나 식은땀이 흐를 경우
- 호흡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정신상태에 이상이 올 때
- 구토증상이 날 때
- 현기증이 나거나 하체에 힘이 빠져 흔들릴 때

『경찰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 도핑테스트 시행 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금지방법의 사용은 금지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7호(2014.12.31)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붙임 1·2 참조)은 금지됩니다
※ 대한민국 정부 관보 제18420호(P 785 ~ 787) 고시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체력시험 대상자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 도핑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시료는 냉장 보관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시험실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받은 후 일정기간 내에 치료 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분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 사용 면책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게 됩니다
- B시료분석을 요청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 판정되지만, B시료분석결과 역시 비정상 분석결과를 확인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 사용면책 신청 안내

- <의 의>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인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 사용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응시자는 비정성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별첨의 서식을 작성, 구비서류를 갖춘 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단, 치료목적사용면책이 필요했던 경우에 한함)
- <승인기준> 치료목적 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학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되어야 한다.
-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약물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최종적으로 비정성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임용령」 제46조에 따라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제한됩니다

✓ 금지약물 검색 사이트 (금지약물은 성분명으로 발표)

- www.kada-ad.or.kr (금지약물 검색 → 검색자 해당종목 및 직업 “기타”)
- www.druginfo.co.kr
- www.kimsonline.co.kr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I. 금지약물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³⁾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 drostanolone ▶ methenolone
 - ▶ methasterone(17β -hydroxy- 2α , 17α -dimethyl- 5α -androstan-3-one)
 - ▶ stanozolol
 - ▶ 1-testosterone(17β -hydroxy- 5α -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노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 chlorothiazide ►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 methylhexanamine(dimethylpentylamine)
- ▶ ephedrine
- ▶ methylephedrine

※ methylhexaneam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은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 Buprenorphine
- ▶ fentanyl 및 유도체
- ▶ morphine
- ▶ pentazocine
- ▶ dextromoramid
- ▶ hydromorphone
- ▶ oxycodone
- ▶ pethidine
- ▶ diamorphine(heroin)
- ▶ methadone
- ▶ oxymorphone

II. 금지방법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째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3)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붙임 2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판정기준>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판정기준

약 물 군	약물 성분	판정기준	단위
동화작용제 (7종)	drostanolone	검출 시	
	methenolone	검출 시	
	methasterone	검출 시	
	testosterone	검출 시	
	1-testosterone	검출 시	
	clenbuterol	검출 시	
	stanozolol	검출 시	
이뇨제 (3종)	hydrochlorothiazide	검출 시	
	chlorothiazide	검출 시	
	furosemide	검출 시	
흥분제 (3종)	methylhexaneamine	검출 시	
	methylephedrine	> 10	µg/ml
	ephedrine	> 10	µg/ml
마약류 (11종)	Buprenorphine	검출 시	
	dextromoramide	검출 시	
	diamorphine(heroine)	검출 시	
	fentanyl	검출 시	
	hydromorphone	검출 시	
	methadone	검출 시	
	morphine	검출 시	
	oxycodone	검출 시	
	oxymorphone	검출 시	
	pentazocine	검출 시	
	pethidine	검출 시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